

이슈
보고서

2021

13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백영화

머리말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당 승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나 제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 새로운 보험계약에 따른 면책 기간 신규 개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승환시키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및 보험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 해석상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향후 개선사항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합리성과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7월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II.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4
1. 규제의 취지 및 내용	4
2.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	16
III.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해석 및 준수 관련 쟁점	25
1. 비교 안내 시점	25
2. 부당 승환계약의 범위	31
3. 타사 승환	35
4. 부활 청구	37
IV. 맺음말	40
• 참고문헌	43
• 부록	44

표 차례

〈표 II-1〉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조항	5
〈표 II-2〉 유사 계약의 범위에 대한 보험업법 시행령 조항	7
〈표 II-3〉 6개월 이내 승환계약의 경우 비교 안내 사항	12
〈표 III-1〉 적합성 원칙 및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대한 조항	29

그림 차례

〈그림 II-1〉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10
〈그림 II-2〉 비교 안내 확인서 양식	13
〈그림 II-3〉 유권해석 사례에 의한 소멸의 범위	18
〈그림 II-4〉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따른 의무 사항	19
〈그림 II-5〉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20
〈그림 III-1〉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내용	25
〈그림 III-2〉 비교 안내 시점 관련 쟁점	26
〈그림 III-3〉 보험상품의 구분	31
〈그림 III-4〉 비교 안내 업무 흐름	36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 모집종사자가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불공정한 방법이나 부당한 경쟁으로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계약 인수에만 목적을 두어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법률로 이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¹⁾

이러한 모집 규제 중의 하나로, 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이른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가 있다.²⁾ 부당 승환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모집종사자가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사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에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자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신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서 부당 승환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³⁾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 새로운 보험계약에 따른 면책 기간 신규 개시 등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⁴⁾ 보험업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 승환계약 관련 지적이나 제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및 2019년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보험 또는 보험대리점 권역에서의 지적 유형 중의 하나로 ‘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또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⁵⁾ 2019년과 2021

1) 노상봉·홍범식(1995)

2) 참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이 시행(2021. 3. 25)됨에 따라 기존 보험업법상 모집 규제 중에서 일부는 금소법으로 이관되고 보험업법에서는 삭제되었음(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 조항). 그러나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험업법에서 규율함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 28),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정채웅(2017)

5) 금융감독원(2019; 2021)

년에는 보험회사들이 부당 승환계약을 이유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에 있어서의 부당 승환계약 등 모집질서 위반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으며,⁶⁾ 이에 금융감독원은 GA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도 보험 검사 업무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⁷⁾

부당 승환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보험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행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의 해석상 불명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②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을 비교하여 알려야 한다. 여기서 ①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데, ②와 같이 기존 보험계약이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인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관련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 해석상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향후 개선사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합리성과 준수 가능성이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 23),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7) 금융감독원(2021. 4. 6)

II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본장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취지 및 내용을 살펴보고,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된 기존의 감독당국의 해석 사례 및 최근 제재 사례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규제의 취지 및 내용

가. 규제의 의의 및 취지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⁸⁾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⁹⁾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우선, 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계약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보험계약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나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기존 보험계약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면책기간 등이 새로 개시되어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¹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9)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10) 백영화(2021)

그런데 보험 모집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집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있으며, 이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전환시키는 행위,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규제의 내용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조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재(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당 승환계약 금지의 원칙

가) 부당 승환계약의 행위 유형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①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을 청약하게 하거나, ②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③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④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행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선 ①과 같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기서 ‘소멸’이란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의미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¹¹⁾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다고 함은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 담보범위, 예정이율, 면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¹²⁾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도록 하는 경우나, 보험계약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고 정확한 인식이 없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부당한 소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¹³⁾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¹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것과

11) 한기정(2019)

12) 정찬형(2007); 정재웅(2017); 한기정(2019)

13) 성대규·안종민(2015); 정재웅(2017)

14) 한기정(2019)

새로운 보험계약에 청약한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서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계약 사이에서의 승환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을 승환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또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여야 한다.

〈표 II-2〉 유사 계약의 범위에 대한 보험업법 시행령 조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한편 기존 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의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¹⁵⁾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모집종사자가 승환을 유도할 유인이 적고 주로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¹⁶⁾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특성상 모집종사자의 유도에 의한 승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②의 행위 유형인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는 결국 ①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먼저 소멸시키는

15)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단서.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으나, 조문의 취지상으로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16) 정채웅(2017); 한기정(2019)

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을 먼저 청약하게 하는지 그 선후관계의 차이일 뿐이다.

세 번째 행위 유형인 ③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석상 다양한 의견이 있다. 즉,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는 견해,¹⁷⁾ 모든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금지 조항이라고 보는 견해,¹⁸⁾ ①이나 ②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견해¹⁹⁾가 있다.

마지막으로 ④의 경우는 ①, ② 또는 ③의 권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승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규제 위반 시 효과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감사 등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²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²²⁾ 또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직접 위반한 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²³⁾

17) 정찬형(2007)

18) 성대규·안종민(2015); 한기정(2019)

19) 정재웅(2017)

20)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21)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8호

22)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23)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2)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

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취지 및 연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승환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승환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을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승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부당한 승환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및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함으로써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은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 신설된 조항이다. 구 보험업법상으로도 부당 승환계약을 금지하고는 있었으나 당시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²⁴⁾ 그 이상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어떠한 경우가 부당 승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규제 적용과 준수에 있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2003년 5월 29일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2003년 8월 30일 시행), 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②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후 2010년 7월 23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2011년 1월 24일 시행), 현행과 같이 1개월 이내의 승환과 6개월 이내의 승환을 나누어 일정한 경우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24)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5호

보험계약의 승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당성을 판단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위반 여부는 주로 이 간주 조항(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당 승환계약의 유형이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부당성이 워낙 농후하기 때문에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부당하다고 간주한다는 것일 뿐이며,²⁵⁾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내용

〈그림 II-1〉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① 신계약 1개월 전후 기존계약 소멸 행위(단, 계약자 사멸서명 등의 경우는 예외)

② 신계약 6개월 전후 기존계약 소멸되는 경우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는 행위

① 1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라고 본다.²⁶⁾ 즉,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자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승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1개월 이내

25) 한기정(2019)

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3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에 대해 부당성 간주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1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에 대한 조항은 2010년 7월 23일 보험업법 개정 시 신설된 내용임

의 승환이라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본인 의사의 증명은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²⁷⁾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²⁸⁾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자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²⁹⁾

② 6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해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³⁰⁾ 즉,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승환의 경우에도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두 계약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승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³¹⁾ 보험회사는 해당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³²⁾

27)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7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이라 함은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시설 부문, 정보기술 부문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28)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9)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보관·관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3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에 대해 부당성 간주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2010년 7월 23일 보험업법 개정 시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음

31)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32)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보관·관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표 II-3〉 6개월 이내 승환계약의 경우 비교 안내 사항

-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 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위와 같은 비교 안내를 위하여 보험업계에서는 공통된 비교 안내 확인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교 안내 확인서 양식은 2012년 금융감독원의 부당 보험 계약 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³³⁾ 6개월 이내의 승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 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비교 안내 확인서 상단에서 “보험계약 이동 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큰 글씨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사에 가입한 보험계약만을 대상으로(즉,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인 경우, 이른바 ‘자사 승환’ 건에 한정하여) 비교 안내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2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모집종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모집종사자의 경우에는 타사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비교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3) 보험신보(2012. 6. 4), “보험계약... 부당 승환 강력 차단”

〈그림 II-2〉 비교 안내 확인서 양식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15pt 이상)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pt 이상)

1. 귀하께서는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타사계약 포함)이 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소멸 예정인 계약(타사계약 포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오, 없습니다 (14pt 이상)

주1) 상기 답변이 '예'인 경우 아래의 비교설명표 작성 (자사 승환계약의 경우 회사 자체 비교안내 시스템으로 안내)

* 비교설명 내용은 설계사가 작성하되 별도 설명자료 있을 경우 해당 자료 첨부 가능

주2) 기존계약과 신계약 모집인이 동일한 경우 소멸계약이 타사 계약이라도 비교설명서 작성

↓

신규계약 (설계사가 작성)	비교항목 상품명	기존계약 1 (설계사가 작성)	기존계약 2 (설계사가 작성)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주요보장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보험목적		
	보험회사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각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는 행위 금지)

본인(계약자) _____은 기존계약 및 신규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모집인 _____로부터 상기와 같이 충분히 비교설명 받았으며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듣고 동 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14pt 이상)

책임자 확인란
(인)

계약자 : (서명)
모집인 : (서명)
친권자 : (서명)
친권자 : (서명)

한편 통신판매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승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 사항에 대하여 원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³⁴⁾

3)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³⁵⁾ 이하에서는 부활 청구권과 보험계약 취소권 행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부활 청구권 또는 보험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험계약자이며, 만약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무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³⁶⁾

부활 청구권, 보험계약 취소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은 부당 승환을 하게 한 모집종사자가 속하거나 그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다. 여기서 보험중개사가 부당 승환을 하게 한 경우에는 부활 청구나 보험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모집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중개사의 부당 승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34)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6항 제3호. 전자적 방법을 통한 비교 안내를 허용하는 내용은 2019년 12월 18일 신설되었음

35)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36) 성대규·안종민(2015)

만 적용된다.³⁷⁾ 즉,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보험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활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들 사이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³⁸⁾ 또한 실무적으로도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타사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⁹⁾

부활 청구 및 취소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 청구서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⁴⁰⁾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⁴¹⁾ 부당하게 계약이 승환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보험계약이 원래대로 부활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승낙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청구 사이에 현저한 위험 증가가 있는 경우(예컨대 피보험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 경우 등)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⁴²⁾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⁴³⁾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은 기존 보험계약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지환급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지급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 때에 발생한다.⁴⁴⁾

37)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38) 정찬형(2007); 정재웅(2017)

39) 한기정(2019)

40)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41) 보험업법 제97조 제5항

42) 정찬형(2007); 정재웅(2017); 한기정(2019)

43)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44)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2.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 조항의 해석에 대해 다루고 있는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하에서는 해당 규제와 관련한 기존의 감독당국의 해석 사례⁴⁵⁾ 및 제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해석 사례

1) 소멸의 범위 관련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소멸’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청약 철회’ 행위도 소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⁴⁶⁾ 청약 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⁴⁷⁾ 청약 철회 시 보험계약자는 기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청약 철회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이 늦어지거나, 기존 보험계약보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 가입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등 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가능하며, 만약 청약 철회가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45)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 사례와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검토 결과를 분석하였음

46)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80153)

47) 개정 전 보험업법 제102조의4에서 규율하다가 현재는 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율함. 청약 철회 제도는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된 후라고 하더라도 청약 철회 기간 이내라면 가능함

신계약이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기존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청약 철회도 소멸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⁴⁸⁾ 상법 및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여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3년⁴⁹⁾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⁵⁰⁾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의 경우에는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정적으로 부활할 수 없게 된 시점(실효된 날부터 3년⁵¹⁾)에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회신에서 금융위원회는 '갱신이 없는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약 철회'의 경우는 일응 소멸의 범위에 포섭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⁵²⁾도 함께 제시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이후인 2018년에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소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정식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에서도 소멸의 범위에 대해 다룬 사례가 있다.⁵³⁾ 기존 보험계약의 '감액'의 경우도 부당 승환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의 전제 조건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어야 하고 감액을 보험계약의 소멸로 확대하여 부당 승환계약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감액 제도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많은 손실을 보게 되므로 보험 가입금액을 줄여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까지 부당 승환계약으로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48)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5. 7. 22)

49) 2015년 12월 29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전까지는 2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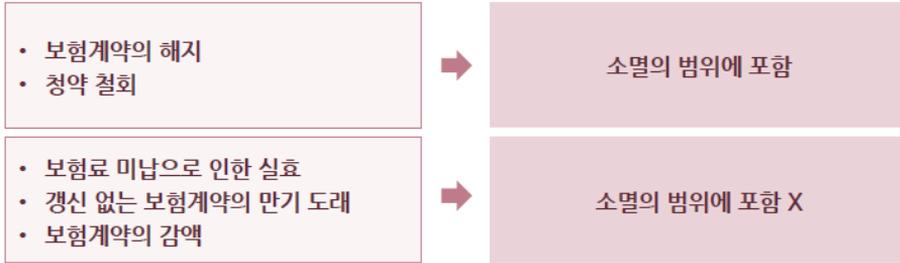
50)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50조의2

51) 회신 당시의 표준약관상으로는 2년이었기 때문에 회신문상으로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52)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적시하여 비초치 의견 또는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53)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2015. 12. 23)

〈그림 II-3〉 유권해석 사례에 의한 소멸의 범위



2) 비교 안내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을 모집한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청약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 안내 확인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⁵⁴⁾

금융정보 조회 제한 신청자가 서면으로 부당 승환계약 비교 안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이들에게도 비교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조회 제한 신청자의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모집종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 조회 제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 관련 정보 조회가 제한되므로 비교 안내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한 금융정보 조회 신청자도 비교 안내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과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 이용이 서로 충돌되는 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⁵⁵⁾ 다만, 확정적으로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추가 검토를 한 후에 추후 승환계약 간주 규정의 해석·적용 지침에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안내하겠다고 회신하였는데, 해당 승환계약 간주 규정의 해석·적용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의 경우에도 비교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⁵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서는 1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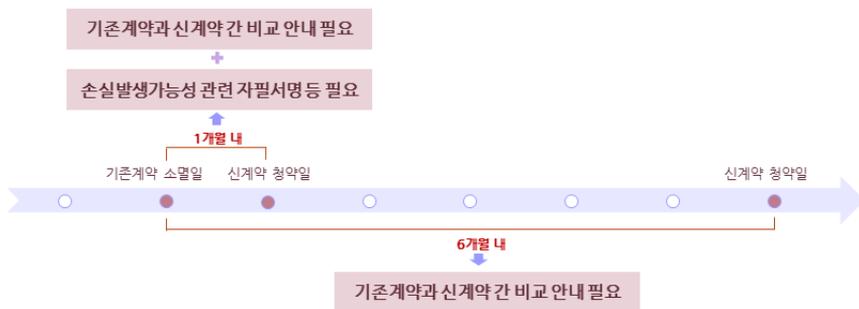
54)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40223)

55)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5. 9. 14)

56)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5. 9. 14)

의 승환 행위와 6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를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되 다만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필서명을 받는 등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개월 이내의 승환 행위의 경우에도 해석상 기존 보험계약과 비교 안내를 한 후에 승환계약의 의사를 묻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1개월 이내의 승환 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승환계약 의사만을 확인하는 것은 위 간주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림 II-4〉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따른 의무 사항



※ 선 신계약 체결, 후 기존계약 소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또한 홈쇼핑에서 유입(In-bound)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고객의 자발적인 보험 가입 의사가 명백하므로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 안내 의무를 면제하여 달라는 현장 건의가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불수용하였다.⁵⁷⁾ In-bound로 유입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계약자가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황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 과정에서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7)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화신(2016. 12. 30)

3) 비교 안내 시점 관련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승환의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비교 안내를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있다.⁵⁸⁾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시점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주고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보험계약 해지 등 소멸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재차 비교하여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에서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과 비교설명을 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명백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그림 II-5〉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4) 비교 안내 확인서의 유지·관리 방법 관련

보험회사는 6개월 이내 보험계약 승환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려야 하며, 그와 같이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⁵⁹⁾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금융위원회가 보관·관

58)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60663)

59)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 비교 안내 확인서를 어떻게 보관·관리하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승환 시 비교 안내 확인서 보관 의무는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와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이 근시일 내에 발생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비교 안내를 충실히 하였는지 증빙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는 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설명서 서명 및 보관 의무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 안내 확인서를 보관하면 된다고 회신하였다.⁶⁰⁾

5) 유사 계약의 범위 관련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유사한 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를 말한다.⁶¹⁾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비교 안내가 어렵다는 점, 또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구분하는 경우에는 보장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예를 들어 암보험과 치아보험의 경우 동일한 제3보험상품에 해당하지만 위험보장 범위는 전혀 다름)까지도 비교 안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 계약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러한 요건 개선 시 TM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현장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고려할 때 전화 모집 등에 대해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⁶²⁾

60)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92). 참고로 상품설명서와 관련하여, 금소법 시행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개정 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3항. 다만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모집의 경우 등은 예외), 보험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상품설명서를 보관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었음. 현재는 금소법에서 상품설명서의 제공 및 확인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설명서 보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6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62)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6. 12. 30). 이와 같이 TM의 경우에 부당 승환계약 간주 범위를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답신하였을 뿐이어서, 예컨대 암보험과 치아보험의 경우까지도 비교 안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6) 기타

보험업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의 의미가 가입설 계서 발행 시점인지 아니면 청약서 발행 시점인지, 또한 같은 호에서 '6개월'이 180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의 의미는 실제 청약자의 청약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며, '6개월'은 180일이 아닌 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아울러, 위 조항은 간주 규정일 뿐이므로, 이러한 간주 규정의 상황과 달리 실질적으로 모집종사자의 승환계약 행위가 있었다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⁶³⁾

나. 제재 사례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위반을 이유로, 즉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 후 새로이 청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집하게 하였다',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서 보장내용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교 안내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제재를 받은 과거 사례들이 있다.⁶⁴⁾

또한 예전에는 보험회사들이 비교 안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 즉, 2011년에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신계약 입력 및 심사 과정에서 비교 안내 대상 보험계약을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부당 소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비교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⁶⁵⁾ 2014년에도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설계사가 비교 안내 대상 계약임을 인지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용이하게 비교 안내

6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50345)

64) 검사 결과 제재 내용 공시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움

65) 4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11. 4. 14)

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 안내 팝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스크립트에 중요 사항 비교 안내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판매토록 함으로써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음을 이유로 제재를 받거나,⁶⁶⁾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비교 안내 대상 계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⁶⁷⁾

최근에는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⁶⁸⁾ 즉, 보험업법상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 시점에서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 시점에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판매(TM) 채널에서의 비교 안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음성 안내를 통해 비교 안내를 실시하고 청약 완료 후에 우편으로 비교 안내 확인서를 발송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비교 안내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TM 보험 모집에 있어서 청약 전에 미리 비교 안내 확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부한 후에 비교 안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TM 채널을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 확인서 관리에 있어, 회사의 전산시스템상 비교 안내 확인서를 이미지 파일이 아닌 원자료(Raw Data)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비교 안내 확인서의 발송 현

66)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14. 12. 31). 해당 회사는 2012년에 비교 안내 팝업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검사 대상 기간에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교 안내 팝업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의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 것임

67)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14. 10. 2). 해당 보험회사의 경우 통신판매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실시 이후 신계약 체결 건 중 아직 비교 안내 대상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 개선사항으로만 지적된 것으로 보임

68) 4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19. 12. 11); 2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21. 2. 19);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21. 2. 23)

항 조회는 가능하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중요 사항 비교 안내 이행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비교 안내 확인서를 이미지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⁶⁹⁾

69) 2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2021. 2. 23)

III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해석 및 준수 관련 쟁점

본장에서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대한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불명확하거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비교 안내 시점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필서명 등에 의한 본인 의사 확인 또는 비교 안내를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시점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III-1〉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의 내용

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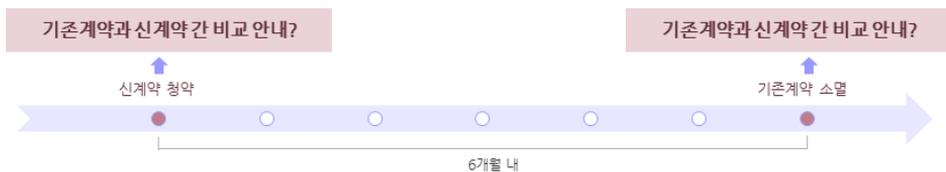
②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여기서, 기존 보험계약이 먼저 소멸되고 그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라면(이른바 ‘선소멸’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자필서명 등을 받거나(1개월 이내 승환의 경우)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6개월 이내 승환의 경우) 명확하다.

그런데 기존 보험계약이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이른바 ‘후소멸’의 경우), 즉 새로운 보험 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다가 그 후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비교 안내 등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1개월 이내 승환의 경우에는 자필서명 등을 받아야 하는 시점, 6개월 이내 승환 행위의 경우에는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시점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①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②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림 Ⅲ-2〉 비교 안내 시점 관련 쟁점



가.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우선,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중요 사항에 대해 비교하여 알림으로써,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감독당국은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계약 승환을 시켰음을 이유로 하여, 2019년 및 2021년에 다

수의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은 것이다.⁷⁰⁾

과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서도 부당 승환계약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에서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과 비교설명을 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지 그 의사가 명백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⁷¹⁾ 다만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비교 안내를 기존 보험계약 소멸 시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에 해야 하는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에 비교 안내를 한 경우에 이후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에도 다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에 비교 안내를 했다면 기존 보험계약 소멸 시 재차 비교 안내를 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인 것이었다.

나. 기존 보험계약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와는 달리,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이고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될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비교 안내를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⁷²⁾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받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더 불리할 것은 없다고 본다.

70) 해당 사례에서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 시점에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비교 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추후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시점에 비교 안내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71)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문(160663)

72)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다. 검토 의견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면,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모집종사자가 유도하거나 추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더라도 이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⁷³⁾

물론, 취지만 놓고 본다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불필요하게 새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의 문언 및 체계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승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 모집 시 기존 유사 보험계약의 확인 및 비교 안내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적합성 원칙이나(개정 전 보험업법 제95조의3⁷⁴⁾),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보험업법 제95조의5)와 같이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시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이나 방식과는 상이한 것이다.

73) 물론, 모집종사자가 추후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한 사정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할 것임. 여기에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하고 논의함

74) 금소법 시행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금소법 제17조에서 적합성 원칙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표 III-1〉 적합성 원칙 및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대한 조항

개정 전 보험업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 상황, 보험 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 상황, 보험 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적합성 원칙이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의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하기 전에 일정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모집종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승환시키는 행위’이며,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승환 시에는 비교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부당하다고 간주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당 승환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 안내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도 보험업법에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보험계약이 먼저 청약되고 기존 보험계약이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비교 안내를 언제 하면 되는 것인지 그 시점에 관해 별도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안내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적어도 ‘소멸 예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현행 보험업법의 해석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소멸될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⁷⁵⁾

기존 보험계약이 먼저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지 중인 경우에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도록 규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유권해석이나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는데 이를 유지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는지와 해당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것인지를 물어보고 만약 소멸시킬 예정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가 소멸 예정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 소멸의 문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교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⁷⁶⁾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통하여 ① 모집종사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②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유사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 그 규제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①과 같이 부당한 승환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에 의하면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②의 목적과 취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②와 같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보험

75) 백영화(2020)

76)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 전에 문의나 신청 단계에서 비교 안내를 받아서 결국 소멸시키지 않은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업법 개정을 통해서 적합성 원칙이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처럼 보험계약 모집 시에 모집종사자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기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유사한 계약에 대해서는 비교 안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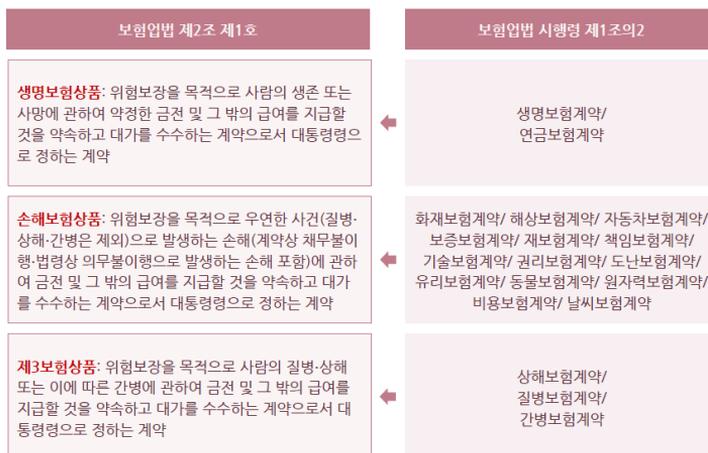
2. 부당 승환계약의 범위

어떠한 경우에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 범위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가. 유사 계약의 범위

우선,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계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또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를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III-3〉 보험상품의 구분



이에 따라 비교 안내 등의 대상이 되는 유사 계약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에 따라 구분되거나,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각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과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와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3보험(질병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법 문언에 따라 해석한다면 비교 안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에 새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 계약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 보험계약의 수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오히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을 효율적으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거나, 실제 담보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사 계약의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예컨대, 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에 있어서는 암보험, CI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⁷⁷⁾ 이러한 구분 기준 등을 참고해볼 수도 있을 것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소멸의 범위

앞서 유권해석 사례들에서 본 것처럼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 소멸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청약 철회 행위가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은 과거에는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가 이후에는 소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77)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시행세칙」;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상품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에서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정적으로 부활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⁷⁸⁾ 그런데 과거 제재 사례를 보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비교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⁷⁹⁾ 물론 해당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위 제재 사례에서 문제된 건들이 실제로 부활이 가능한 건들이었는지 아니면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이미 지급 받았거나 실효된 날부터 2년⁸⁰⁾이 지나서 확정적으로 부활할 수 없게 된 건들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신 사례와 제재 사례를 보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건의 경우에 비교 안내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감액의 경우에도, 소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과거 해석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명목적 금액만 남기고 감액하는 경우에도 소멸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 소멸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수범자 입장에서의 규제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소멸에 포함되어 비교 안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는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감독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In-bound 유입 계약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In-bound로 유입된 보험계약)에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78)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5. 7. 22)

79)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15. 1. 22)

80) 2015년 12월 29일 후에는 3년으로 변경되었음

현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데,⁸¹⁾ 그 외에 홈쇼핑이나 광고 등을 보고 In-bound로 유입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이는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모집종사자의 유도에 의한 승환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In-bound 유입 계약의 경우에도 비교 안내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⁸²⁾ 보험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계약자가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황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비교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한 쟁점과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가 ① 모집종사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②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유사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의 논의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②의 입장에서 In-bound로 유입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앞서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한 쟁점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보험업법은 ①과 같이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보험 가입이 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②와 같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라. 기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나 승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를 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경우 등에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

8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단서

82)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화신(2016. 12. 30)

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나 감독당국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①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②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③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④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특히 이 중에서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범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학계에서도 해석상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과연 위 규정이 부당한 청약 유도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인지, 부당 승환을 위한 준비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①이나 ②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타사 승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인 경우라면(자사 승환 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여 비교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기존 보험계약과는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라면(타사 승환 건) 기존에 유사한 보험계약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현재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모집종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비교 안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이라 함)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서 기존 보험계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비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도입을 운영하자는 논의가 있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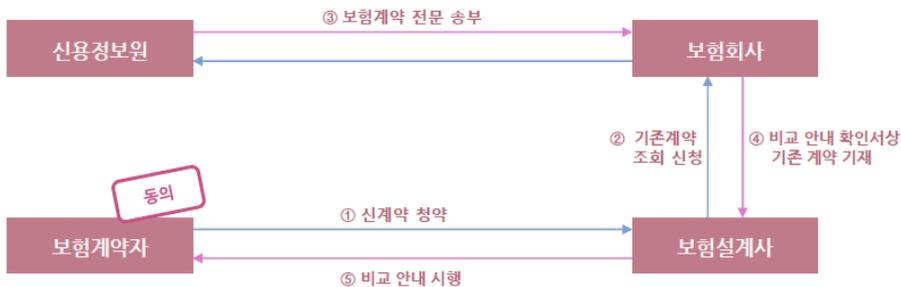
현재 보험업법 제95조의5에 의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서 보험회사 또는

83) 이투데이(2019. 4. 11), "손해보험, 신규 가입 때 기존상품 비교 안내 의무화한다"; 한국경제(2019. 11. 26), "보험 갈아타기 꼼짝마... 신·구계약 비교시스템 구축된다"

모집종사자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⁸⁴⁾ 이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서 신용정보원에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기존 보험계약 조회 요청을 한다. 신용정보원이 집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기존 보험계약 정보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면, 보험회사는 비교 안내 대상인 기존 보험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유사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 안내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III-4〉 비교 안내 업무 흐름



자료: 손해보험협회

위와 같은 비교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계약 정보를

8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 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받는 경우 비교 안내 필요 여부 판단 및 비교 안내 수행 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목적(새로운 보험상품 마케팅 등)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원 보유 정보를 통한 비교 안내 및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에 대하여 법규에서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의 경우처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부활 청구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데,⁸⁵⁾ 앞의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정보원 보유 정보를 이용하여 타사에의 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를 적용하는 방안(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신용정보원 정보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⁸⁶⁾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먼저 있는 경우에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는데 이를 유지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

85)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86) 이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것임

중에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 소멸의 문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비교 안내를 받고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최종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 전에 체결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함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상법에서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즉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⁸⁷⁾ 부활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⁸⁸⁾ 그에 따라 표준약관에서도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 부활의 경우에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⁸⁹⁾

그런데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해서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의 경우에는 모집종사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 취지를 좀 더 충실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경우인데 반하여, 부당 승환계약 부활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모집종사자에게 있는 경우인 것이다.

이에 부당 승환계약의 부활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이나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재심사 절차 없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방안

87)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상법 제650조의2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조항인 상법 제6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88) 양승규(1994); 손주찬·정동윤(2003)

89)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2항

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무상으로는 보험회사들도 부당 승환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당 승환계약의 부활 절차에 있어서 고지의무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비교 안내 시점, 유사 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비교 안내 등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사유 등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므로,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수범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이나 감독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을 면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어떠한 목적과 취지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해석 및 제재 사례들을 보면,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승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문언과 실제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모집종사자가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 유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자발적 유입 건의 경우에는 모집종사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보험

계약자가 불필요하게 유사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자발적 유입 건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의 존재 및 해당 계약과 새로 체결하려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근본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부당 승환계약 규제를 하는 것이 ① 모집종사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②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유사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 그 규제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보험업법은 모집종사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②와 같이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법에 반영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⁹⁰⁾

현재 보험업법이나 금소법에서 보험계약 해지 시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⁹¹⁾ 보험계약 해지 시의 유의사항(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될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비교, 신규 보험계약 가입 시 보험료 인상이나 신규 면책기간 적용 등의 가능성,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계약 해지 시 손실이나 불이익은 반드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이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는 현행과 같이 모집종사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로써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보험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일반적인 규제

90) 백영화(2021)

91)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만, '보험금 해지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금소법상으로도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의 설명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나 해지 시의 설명의무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로서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점검 및 감독과 관련하여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의 승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당성을 판단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을 두고 있고, 실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 관련 점검과 감독은 위 간주 조항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부당 승환계약과 관련해서는 1개월 이내 승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 서명 등을 받았는지, 6개월 이내 승환의 경우에 비교 안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사나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 원래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보험계약 승환을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은 어디까지나 입증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 부당 승환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부당 승환계약이 해당 간주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예를 들어, 6개월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승환 등) 실제로 모집종사자의 부당한 승환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9), 『18년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유형화 및 활용방안』
_____ (2021), 『19년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유형』
_____ (2021. 4. 6), 『2021년도 보험검사 업무계획』
- 노상봉·홍범식(1995), 『보험업법 축조해설』, 매일경제신문사
- 백영화(2020),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KIRI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 _____ (2021),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 『KIRI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 성대규·안종민(2015), 『한국보험업법』, 두남
- 손주찬·정동윤(2003), 『주석 상법 [보험]』, 한국사법행정학회
- 양승규(1994), 『보험법』, 삼지원
- 정찬형(2007), 『주석 금융법(II) 보험업법』,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채웅(2017), 『보험업법 해설』, 진한엠앤비
- 한기정(2019), 『보험업법』, 박영사

NAIC 생명보험 및 연금의 승환에 대한 모델 규칙

- 미국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생명보험 및 연금의 승환에 대한 모델 규칙(Life Insurance and Annuities Replacement Model Regulation)을 마련하였음
 - 위 모델 규칙은 생명보험과 연금의 승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승환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최소 행위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래에서는 모델 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봄
- 모집인의 의무
 - 보험의 청약 단계에서 모집인은, 청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모집인 및 청약자가 모두 서명해야 함)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함
 - 청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 승환과 관련한 모집인의 의무는 종료됨
 - 청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있다고 답하는 경우, 모집인은 승환에 관한 공지(Notice Regarding Replacement)를 청약의 수령 시점 전까지 청약자에게 제시하고 읽어주어야 함
 - 승환에 관한 공지 양식은 모델 규칙에 첨부되어 있으며(Appendix A), 감독당국의 승인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식(다만 모델 양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함)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됨
 - 승환에 관한 공지에서는 승환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의 목록(보험회사명, 피보험자명, 증권번호 등을 통해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함)을 기재해야 하며, 각 보험이 승환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보험에의 가입을 위한 자금 원천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함
 - Appendix A 양식에서는 청약자로 하여금 승환이 청약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할 것, 사업비를 부담하여 해약 공제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더 적은 비용으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존 보험계약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청약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연락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승환에 관한 공지는 모집인 및 청약자가 모두 서명해야 함

- 승환 거래와 관련하여 모집인은 청약이 완결되는 시점까지 청약자에게 모든 판매 자료(Sales Material)의 원본 또는 사본을 남겨야 함
- 승환 거래와 관련하여 모집인은 모집인의 의무 관련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사본, 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보험회사 승인 판매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 판매 과정에서 모집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판매 자료들의 사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함

○ 모집인을 사용하는 보험회사의 의무

- 보험회사는 모델 규칙에 따른 요구사항들의 준수 여부를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모집인들에게 모델 규칙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모집인 교육 자료에 포함시켜야 함
 - 승환에 관한 보험회사의 입장에 대한 서면 진술서(승환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침)를 각 모집인에게 제공해야 함
 - 각 승환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위 보험회사의 입장 및 지침에 부합해야 함
 - 모델 규칙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갖추어져야 함
 - 승환되었지만 승환으로 보고되지 않은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절차(체계적인 고객 서베이, 인터뷰, 확인서, 내부 감시 프로그램 등)가 갖추어져야 함
- 보험회사는 모집인의 생명보험 및 연금 승환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며 감독당국 요청 시 감시 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감시 기록에는 모집인의 연간 모집 실적 대비 승환계약의 비중 및 실효 건수의 비중, 회사 자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승환으로 적발된 건수, 승환 모집인 및 기존 보험회사별로 분류된 승환계약들이 포함될 수 있음

- 청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모집인 및 청약자가 모두 서명해야 함)를 생명보험 또는 연금의 청약 서류와 함께 또는 청약 서류로서 요구해야 하고,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모델 규칙에 첨부된 승환에 관한 공지 양식을 채워서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함
-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판매 자료들과 모집인 및 청약자가 서명한 진술서 사본을 보험 기간 만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

○ 모집인을 사용하는 승환 보험회사(Replacing Insurer)의 의무

- 승환 보험회사는 모델 규칙에서 요구하는 양식들이 수령되었는지 또한 모델 규칙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승환을 나타내는 청약서를 수령하고 5영업일 이내(청약서상 승환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승환을 확인한 때)에 승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기존 보험회사가 요청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개요 또는 안내 자료 등의 사본을 기존 보험회사에 송부해야 함
- 승환에 관한 공지(모집인별로 분류) 사본을 최소 5년 또는 감독당국의 다음번 정기 검사 시점(둘 중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까지 보관해야 함
- 보험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 보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함
- 승환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회사와 동일 회사이거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경우, 승환 보험회사는 대체되는 보험계약하에서 경과된 부쟁(Incontestability) 기간 또는 자살 기간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의 액면 금액까지 크레딧을 부여해야 함

○ 기존 보험회사(Existing Insurer)의 의무

- 승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승환에 관한 공지(승환 보험회사별로 분류)를 최소 5년 또는 감독당국의 다음번 정기 검사 시점(둘 중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까지 보관해야 함
- 기존 보험계약이 승환된다는 통보를 받고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가치, 예시 도표 또는 보험계약 개요에 대한 정보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존 보험가치의 차용, 해지 또는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보험회사는 보험 가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보장요소(Guaranteed Elements) 및 미보장요소(Non-guaranteed Elements), 액면 금액 또는 해지환급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험계약자에게 보내야 함

○ 직접 판매(Direct Response Solicitations)의 경우 보험회사의 의무

- 직접 판매(모집인에 의한 모집이 아니라, 제휴회사를 통한 모집 또는 우편·전화·인터넷 또는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집) 절차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자에게 해당 청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대체, 해지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를 묻는 진술서를 청약 서류와 함께 또는 청약 서류로서 요구해야 함
- 청약자가 승환이나 변경 의도가 없다고 답하거나 진술서에 답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승환에 관한 공지(Appendix B 양식)를 청약자에게 송부해야 함
 - 감독당국의 승인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식(다만 모델 양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함)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됨
 - Appendix B 양식에서는 신규 보험에 가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실수일 수도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의 혜택과 신규 보험계약의 혜택을 신중하게 비교하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물어보라는 점 등을 청약자에게 알리고 있음
- 보험회사가 승환을 제안한 경우이거나 청약자가 승환 의도가 있다고 답하고 보험회사가 승환을 계속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승환에 관한 공지(Appendix C 양식)를 청약자에게 제공해야 함
 - 감독당국의 승인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식(다만 모델 양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함)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됨
 - Appendix C 양식은 Appendix A 양식과 내용상 거의 유사하며, 다만 모집인의 서명란이 빠져 있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저자약력

백영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변호사 / 연구위원
E-mail : pyh@kiri.or.kr

이슈보고서 2021-13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1년 7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54-9
979-11-89741-37-2(세트)